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2가단50667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김윤석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현
담당변호사 강신묵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9. 2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1. 9.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1. 9. 3. 접수 제1404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4.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원금 382,500,000원, 보증기한 2013.12. 13.(나중에 2022. 6. 3.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85%)를 발급해 주어, C가 2012. 12. 14. D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와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C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20. 6. 1. 이후 연 8%)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원고에게 지급하고,

C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당하거나, 폐업 내지 영업을 정지하거나, 조세공과를 체납하거나, 당좌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원고는 C에게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구상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다.

라. B는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모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그 후, C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대출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고 그 대출기한을 1년씩

연장하여 오다가, 2021. 10. 1. 이래 이자연체 사태에 빠짐으로써 2021. 11. 2.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하는 대출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2022. 3. 14. D은행에게 384,082,630원(원금 374,000,000원 + 이자 10,082,6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수추가보증료는 1,946,840원 $\{374,000,000\text{원} \times 1.9\% \times 100(2021. 12. 4. \sim 2022. 3. 13.) \div 365, \text{원 이하 버림}\}$ 이고,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2,458,490원이다.

사. B는 2021. 9. 3.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40405호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30,000,000원)를 경료하였는데, 당시 B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신용보증의뢰인과 그 연대보증인인 C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487,960원(대위변제금 384,082,630원 + 미수추가보증료 1,946,840원 + 법적절차비용 2,458,4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구상금채무가 있다.

2) B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미 구상권 채권 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주채무자인 C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연속적인 대출기한 연장 사태를 거쳐 보증사고(2021. 10. 1.부터 이자 연체로 2021. 11. 2. 대출사고 처리)가 발생하였는바, B가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실제로 원고가 2022. 3. 14. C의 채무를 은행에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주문 기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의 동기와 경위, 내용에 비추어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홍도

부 동 산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건물 G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H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연립주택

1층 508.60㎡

2층 836.21㎡

3층 846.25㎡

4층 1171.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 대 6594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I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196.63㎡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65949분의 280.11 끝.

